

의안 번호	1053	【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14. 03. 05.(수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03. 10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4. 03. 17.(월)

## 2. 개정이유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더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 징수 근거마련 (안 제7조제1항)
- 나.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내용(안 제7조제3항)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변경

## 4. 관련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- 다.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16조, 시행령 제12조

## 5. 검토의견

-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
-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내용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
-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하고

- 이용자들의 더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※ 관련법규

### [지 방 자 치 법]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>

### [자원봉사활동 기본법]

제16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4.1.7]

**[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]**

**제12조(국·공유재산의 사용)**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
2.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
3.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. 이 경우 국·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·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·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② 국·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